

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4. 15.] [조례 제3050호, 2025. 4. 15., 일부개정]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(환경과), 033-670-2340

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0. 04. 26., 2025. 2. 17.>

1. "생활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<개정 2007.12.31>
2. "대형폐기물"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[별표1]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.<개정 2010. 04. 26>
3. "재활용가능폐기물"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·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[별표2]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.<개정 2010. 04. 26>
4. "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"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.<개정 2008.10.6>
5. "공사장 생활폐기물"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<개정 2008.10.6>
6. "소량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"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.<개정 2008. 10. 6>
7. "사업장 생활계 폐기물"이라 함은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"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"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.<신설 2008. 10. 6>
8. "재사용봉투"라 함은 1회용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격으로 제작한 2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말한다.<신설 2004. 8. 2, 2008. 10. 6>
9. "생활계 유해폐기물"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.<신설 2025. 4. 15.>